

“모방상표”의 등록, 더 이상 안된다!

‘2006년 말 목표로, 상표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더 이상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쉽게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특하게 구성된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의 경우에는 아래 <참고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타인의 독특한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도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되고, 또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선사용자)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인하여 정당한 상표사용자의 신용, 명성이나 이익이 크게 훼손되거나 일반수요자들이 해당 상품이 어느 회사의 것인가(즉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와 이러한 모방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은 다음 정당한 상표사용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등의 사회적 폐단이 존재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상표법 개정은 모방상표의 등록으로 인한 이와같은 사회적 문제 내지 폐단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모방대상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즉 주지·저명상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인 경우에도 이를 모방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모방상표의 등록을 철저히 차단하고, 또 설령 모방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방상표의 등록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엄격한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운영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상표법의 개정추진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표의 중요성 및 상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날로 강조되고, 해외여행 일상화·시장 개방의 자유화·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을 통한 정보 공유의 동시화 등을 통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거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한편,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상표법 개정내용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모방상표의 등록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은 물론, 국제교역규모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 및 국가브랜

특허심판, 언제 종결될지 쉽게 알 수 있어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대상을 모든 당사자에게 사건으로 확대

특허심판원은 앞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함으로써, 특허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는 당사자들에게 심판사건이 언제 종결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의견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심판청구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지하였다.

이로 인해, 심판청구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 2006년 말에는 대부

분의 당사자계 심판사건이 6개월 내에 종결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 우선심판 결정서에도 미리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병기하여 통지함으로써 당사자가 심판사건의 처리일정을 알기 쉽게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심판원이 모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사건의 종결 시점을 더욱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드의 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본다. 또한 모방상표를 근절하고 고유 브랜드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특허청의 상표심사 및 심판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상표법 개정에는 그 외에도 기술과 산업발달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의 새로운 상표가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상표이의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대 등 국민의 편의가 제고되도록 상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 내용은 2006년중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곧 관계부처 의견문을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있다.

제공 특허청